〔일련번호 : 32〕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공공요금 납부 지연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동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에 따라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3조(지출 및 지급의 원칙)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〔별표 2〕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는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동은 매월 전기안전관리대행 경비를 납부하면서, 매월 27일 동주민센터 공공요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납기일까지 금액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2024년 7~10월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고 납기일이 지난 후에 요금을 이체한 사실

이 있다. 그 결과 공공요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게 되어 2024년 8월 동 청사 수도요금이 일부 미납되어 체납금이 발생하였으며, 7~10월 동안 자동이체로 요금이 이미 빠져나간 이후에 사후 입금처리하여 실제로는 다른 요금의 납부를 위한 계좌의 예치금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 비용을 납부하게 사실이 있다.

[표1] 전기안전관리대행 납부내역

연번	지출품의 일자	건명	금액	자동이체일 (출금일자)	입금일자	비고
1	240801	24년 7월 전기안전관리대행 경비 지급	693,880원	240727	240803	선 통장출금 후 요금이체
2	240919	24년 8월 전기안전관리대행 경비 지급	693,880원	240827	240923	
3	241025	24년 9월 전기안전관리대행 경비 지급	693,880원	240927	241028	
4	241029	24년 10월 전기안전관리대행 경비 지급	693,880원	241028	241030	

[표2] 체납금 발생 내역

연번	지출품의 일	건명	지출금액 (원)	연체료 (원)	비고
1	2024-10-28	2024년 8월 동 청사 수도요금 납부(체납분)	508,680	14,800	연체료는 담당자 본인 부담함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의)